

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2389

제출년월일 : 2013. 6. //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2013년 12월 준공예정인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설치 ·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……(안 제2조)
- 나. 사회복지관 신규 시설 추가 및 복지관 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…(안 제3조)
- 다. 어문에 맞게 조문 정비…(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 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3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3조의 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불임5(비용추계서)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(전문) : 불임 4

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회복지관” 을 “안산시 사회복지관(이하 “사회복지관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“별표 1과 같다.” 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.” 로 하며,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례관리 기능 : 사례발굴,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
2. 서비스제공 기능 : 가족기능 강화, 지역사회 보호,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
3. 지역조직화 기능 : 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·관리 사업
4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
제3조 중 “안산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“별표 2” 를 “별표” 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기능은 「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안산시민 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” 를 “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” 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운영경비등 보조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제4항 중 “시장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” 를 “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이 조례 시행에” 로 한다.

별표1을 삭제하고, 별표2를 별표로 하며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사회복지관 위·수탁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며, 그 위·수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기간 까지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계장 정 천 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장희정 (행정 2863)

[별표]

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3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군자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
본오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39
부곡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3
초지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
와동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18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업내용)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<u>별표 1과 같다.</u>	제2조(사업내용) 안산시 사회복지관(이하 “사회복지관”이라 한다)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사례관리 기능 : 사례발굴,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. 서비스제공 기능 : 가족기능 강화, 지역 사회 보호,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. 지역조직화 기능 : 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·관리 사업 4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안산시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<u>별표 2와 같다.</u>	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별표-----.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 그 기능은 「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②----- -----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7조(운영경비등 보조)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, 인건비,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.	제7조(운영경비등 보조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·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----- -----.</p>

현
행

기
정
안

[별표1]

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(제2조 관련)

<삭제>

사업분야	단위사업명	사업내용
가족 복지사업		<p>(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성적인 가족관계를 유지·증진하는 등에서 기족의 능력을 개발·강화하는 사업(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)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교육 및 충원 프로그램 : 가족교육, 부모교육, 가족역할훈련, 대인관계훈련, 의사소통 증진사업 -상담 및 검사 : 부모상담, 부모상담, 가족상담 등 (법률·의료상담, 심리검사 등 포함)
(1) 가족 관계 증진 사업	(2) 가족기능 보완사업	<p>(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,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아동 대상 프로그램 :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-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: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(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), 사회성 향상, 감성교육, 삼성발달 프로그램, 친로팀색 및 지도, 학교사회사업
1. 가족 복지사업	(3) 가정문제해결 · 치료사업	<p>(문제)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친구·치료·사회복지 지원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신체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: 장애아동 조기교육, 음악·놀이·미술 등 특수치료,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-정신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: 정신보건서비스,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, 정신장애인, 정신체인,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-청소년 프로그램 :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, 학교 부적응 또는 정체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-위기개입 문제 : 이혼가정, 해체위기 가정 등 -폭력·학대 : 아동학대 및 방임, 노인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
(4) 부양가족 지원사업	(5)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편리체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 가족 대상 지원사업	<p>(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편리체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 가족 대상 지원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처매노인 가족지원, 장애인 가정지원,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,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
2. 지역사회 보호사업	(1) 급식 서비스	<p>(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철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식사 배달, 일반찬 배달, 경로식당운영, 무료급식
	(2) 보건의료 서비스	<p>(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세가복지사업 대상자를 위한 보건·의료 관련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), 간병서비스, 물리치료, 재활치료, 보건교육, 방문간호 (보건기관 연계), 영양서비스(영양지도 및 상담)
	(3) 경제적 지원	<p>(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의료비·교육비·생활비 등 지원, 후원품 제공, 생활용품 지원 등
	(4) 일상생활 지원	<p>(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)</p>

현 행

개 정 안

		- 청소·세탁·장보기·취사 등 가사서비스, 목욕, 이·미용, 심부름, 차량지원, 주거환경 개선 등
(5) 청서지원 서비스		○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olumn적인 지원사업 - 말벗, 안부전화 등 노인청서지원, 의형제·의부모 관계맺기
(6) 일자보호 서비스		○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자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·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- 노인 주간·단기보호, 치매노인센터, 장애인 주간·단기보호, 실직자 쉼터, 노숙인 쉼터, 공동생활가정
3. 지역사회 조직사업		○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, 이러한 주민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- 주민조직체 형성·운영 : 주민포럼, 주민동아리 등 -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를 해결하는 사업 : 환경운동, 소비자고발운동,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- 주민의식교육 : 주민지도자교육, 사회복지교육, 환경교육, 소비자교육 등
(1)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조직강화 및 교육		○ 지역내 복지기관·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- 네트워크구축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, 지역 내 복지시설과의 연계사업 등 -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: 지역복지 대변자로 서의 활동, 지역문제의 발굴 등 -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- 지역 행사 : 경로잔치, 철기행사,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- 시설개방 : 시설대여, 경로당 운영, 주민사랑방운영 - 정보제공 : 일상생활 및 복지 관련정보제공
(2) 복지네트 워크구축		○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·양성하는 사업 -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뉴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계·관리 ○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별·조직하는 사업 -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, 장애인,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
(4)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 자 발굴		○ 이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부방 및 기능교실운영사업 -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경구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실 컴퓨터, 페어노, 미술, 배경도, 서예 등) 실시
4. 교육문화 사업		○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(최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) - 조리사, 이용·미용, 양재(양재), 포장, 세파·제빵, 도배사,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- 교양강좌 : 꽃꽂이, 서예, 독서지도, 종이접기 등
(3) 노인여가·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		

현 행

개 정 안

문화 (4) 문화복지 사업 (1) 창업기능 훈련 (2) 취업일선 (3) 창업 능력 개발 (4) 자활공동체 -육성	-인강온라인교실 : 세교교실, 생활체육, 단천호흡, 수영교실 등 -여가프로그램 : 노래교실, 춤교실 등 -교양교육프로그램 : 노인대학, 컴퓨터, 한글교육 등 (일반주민을 위한 여가, 오락프로그램, 문화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-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-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: 청소년 캠프, 청소년동아리, 장애인 문화체험 등 -주민문화행사 : 영화상영, 춤축제, 음악회 등 (자소득층의 자립 능력培育 및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-봉제, 이용·미용, 조리, 컴퓨터훈련, 공예품제작, 창업교실, 건축관련 세부기술, 서비스 교육 (창업훈련 이수자 기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선사업 -가시도우미·산모도우미·간병인·경비직·조리원·사무원·일용직 등의 일선 -취업·부업 안내센터, 창업정보센터, 창업지도, 고령자취업센터 (근로의욕 및 동기가 빛난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제취업을 위한 심리·사회적인 지원 프로그램 실시사업 -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, 세활프로그램,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(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-자활공동체, 공동작업장, 노인부업실, 장애인자립작업장 등
---	---

[별표 2]

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3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군자종합 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번지
본오종합 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23-1번지
부곡종합 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번지
초지종합 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-3
와동종합 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18

[별표]

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3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군자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회정로 9
본오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39
부곡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3
초지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
와동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18